

#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82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.

발 의 자 : 용혜인 · 황운하 · 손 솔  
이수진 · 정혜경 · 윤종오  
전종덕 · 이주희 · 소병훈  
서미화 · 김남희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

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827호)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,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함(안 제7조제1항 본문).
- 나.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권한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(안 제30조제4항 후단).

다.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및 정직,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권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(안 제33조 단서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827호) 및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8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”를 “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”로 한다.

제30조제4항 후단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국가경찰위원회”로 한다.

제33조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국가경찰위원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임용권자)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<u>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</u>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. 다만, 총경의 전보, 휴직, 직위해제, 강등,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(임용권자) ① -----<br>----- <u>국가경찰위원회의</u>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~ ⑤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0조(정년) ① ~ ③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0조(정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·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<u>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</u> 하고, 총경·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 | ④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국가경찰위원회</u> ----- |

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33조(징계의 절차)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,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 다만, 파면·해임·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,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,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

\_\_\_\_\_

\_\_\_\_\_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징계의 절차) -----

[illegible]

-----국가경찰위원회-----

[illegible]